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37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3769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8가단14624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덕순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구태형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24.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8가단146246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7. 9. 4. 접수 제5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4. 8. 27. 접수 제35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7행 아래에 “1) 주위적 청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8행의 ‘서울 중랑구 E, F호’를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7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4면 13행 아래에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것이므로, 그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말소등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2001. 6. 14. 멸실되어 2001. 6. 26.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9행부터 10행 사이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고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를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이해상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로 고치고, 같은 면 14행부터 15행 사이의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 B이 실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1행부터 2행 사이의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인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결국 D으로부터”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영환, 판사 조진용

별지